2026년 제7호 수록

품목분류

# CASE 1 폴리에틸렌 글리콜

판정번호
H356809

## 물품 정보

**용도**
- 삼투성 완하제로 사용되는 고순도의 원료의약품

**형상**
- 백색의 과립형 분말
- 벌크(Bulk) 상태로 수입

## 쟁점 HS

제 2909 호 에테르·에테르알코올

제 3004 호 의약품

제 3907 호 폴리에테르·폴리에스테르

## CBP 판단

- 쟁점물품은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**고순도 폴리에틸렌 글리콜(PEG)**로, 삼투성 완하제의 **원료의약품**임
- 신청인은 유기화학품인 에테르·에테르알코올 등이 분류되는 **제2909호에 분류 주장**
- 그러나 제29류 해설에 따라 **제2909호 물품의 페그화 유도체는 제29류에서 제외**되며, 주로 제3907호에 분류
- 또한 **벌크 상태로 수입**되어 일정한 투여량 또는 소매용 형태·포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**제3004호 분류 제외**
- 제39류에는 순도나 용도를 이유로 일차제품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므로, **고순도의 의약용 원료도 이 류에 분류 가능**

**제약용 고순도 PEG라도 벌크 상태의 폴리에테르 일차제품으로 보아 제3907호에 분류**

## 미국 HS-CODE 결정

**3907.29**
그 밖의 폴리에테르